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3. 3. 10.(금)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98
발의일자 : 2023. 2. 24.
회부일자 : 2023. 2. 2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박용선 의원 외 14명

2. 제안 이유

-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갱생, 교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시책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규정(안 제5조)
-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제외 대상 규정(안 제6조)
-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을 위한 공사비, 우선순위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맑은물정책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2월 28일 ~ 3월 6일
- 관계법령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녹물, 이물질 발생 등 수도물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 도민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 조성과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공용급수관”, “세대급수관”, “공사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조**는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도법>

제2조(책무)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도내 시·군으로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정비사업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공용급수관으로 정한 것으로서, 환경부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국고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¹⁾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확대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는 정비사업 제외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

1)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국고지원)”사업 *지원대상 :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 강관재질 급수관 사용세대, 2,3순위) 45~60%,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거주 세대. * 제외대상 : ①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세대(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세대), ②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세대, ③ 5년 이내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받은 세대 ④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

조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여 환경부의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제외 대상²⁾ 보다 완화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를 세대급수관과 공용급수관³⁾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2022년 환경부의 국고지원 규모보다 상향조정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구 분	유 형	국고보조사업 ⁴⁾	조례안
최대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최대 200만원,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최대 200만원,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공용급수관	최대 100만원,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최대 100만원,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1순위를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출수 주택 거주 세대로 하고, 2순위를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배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

2)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받은 주택,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지원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한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3) 공용급수관은 단지경계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 중간 급수관으로 아파트로 수도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용급수관을 거쳐야 하나, 사실상 이 급수배관은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다 보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4) 2022년 사업종료.

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는 정비사업 수행 방식으로 도내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정비사업 지원대상자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지방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저수조 등)노후로 인해 녹물, 이물질 등 수질저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해소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 조성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에서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범사업 시행 결과, 지원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자부담(5%)으로 인한 신청저조⁵⁾로 사업집행이 부진하여 사업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도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 658,000세대에 달하고, 수질 민원도 2021년 1,300건에 이르며, 도가 실시한 '2022년 8월 옥내수도시설 정비사업 수요조사' 결과 도

5) 옥내 수도시설은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노후 주택의 경제적 가치하락, 거주자와 소유자 상이, 비용분담 등의 사유로 정비에 소극적임.

내 8개 시·군에 3,149세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비가 필요한 수용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갱생)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수장에서 생산된 맑은 물이 수용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및 도민 물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1. 경북도 상수도 수질 민원 현황
2. 경북도 노후주택 현황
3. 국비보조사업과 도비지원(조례안) 사업 비교

붙임 1

경북도 상수도 수질 민원 현황

연도별 수질 민원 현황

연도	총민원 건수	유형별 민원건수(건)								
		수질	출수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불친절	기타	비 고
2021	65,477	1,300	2,584	203	1,690	12,759	31,080	12	15,849	
2020	64,092	1,218	2,659	116	1,907	11,834	34,273	2	12,083	
2019	69,843	2,465	2,978	150	1,855	13,333	34,891	0	14,171	
2018	70,911	3,041	2,394	191	1,676	16,377	31,519	0	15,713	
2017	54,530	3,187	1,789	220	1,078	11,685	25,297	0	11,274	

시·군별 수질 민원 현황(2021년)

수도사업자	총민원 건수	유형별 민원건수								
		수질	출수불 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불친절	기타	
경상북도	65,477	1,300	2,584	203	1,690	12,759	31,080	12	15,849	
포항시	2,793	72	596	49	356	1,660	60	0	0	
경주시	5,818	196	274	31	0	3,285	2,023	0	9	
김천시	2,632	0	11	0	64	265	2,292	0	0	
안동시	4,699	120	18	51	79	914	3,358	0	159	
구미시	1,080	120	143	0	95	180	449	12	81	
영주시	2,124	53	125	0	133	582	1,231	0	0	
영천시	221	0	164	14	43	0	0	0	0	
상주시	1,948	72	63	0	35	657	0	0	1,121	
문경시	2,735	27	58	0	47	243	1,930	0	430	
경산시	1,390	176	113	0	128	440	169	0	364	
군위군	720	0	0	0	0	266	454	0	0	
의성군	3,477	74	40	10	36	283	1,773	0	1,261	
청송군	6,239	73	183	7	212	340	2,622	0	2,802	
영양군	428	0	0	0	0	49	379	0	0	
영덕군	643	17	11	0	195	408	12	0	0	
청도군	772	10	124	7	43	350	223	0	15	
고령군	9,109	118	13	0	68	868	3,750	0	4,292	
성주군	4,133	11	15	0	14	161	3,927	0	5	
칠곡군	818	22	0	0	14	782	0	0	0	
예천군	7,667	103	25	4	65	632	3,293	0	3,545	
봉화군	4,957	30	601	29	34	303	2,206	0	1,754	
울진군	974	6	7	0	9	90	862	0	0	
울릉군	100	0	0	1	20	1	67	0	11	

* 2021.12.31. 기준 상수도통계.

붙임 2

경북도 노후주택 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건물내주택	비고
노후주택 합계 (①+②)	659,004 (59.7%)	338,704 (74.3%)	265,530 (48.2%)	19,680 (64.1%)	23,510 (49.9%)	12,120 (64.6%)	
20년이상 30년 미만(①)	320,419	89,599	202,599	6,635	15,798	5,788	
30년 이상(②)	338,585	249,105	62,931	13,045	7,712	6,332	
전체 주택수	1,103,666	455,892	551,145	30,721	47,146	18,762	

붙임 3

국비보조사업과 도비지원(조례안) 사업 비교

구분	국고보조사업	조례안(도비지원)
사업명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갱생)사업
사업기간	2022(시범사업, 종료) 2023~(미추진)	2023(시범사업) 2024~2027(평가 후 계속여부 검토)
사업내용	옥내 급수관 개선비용 지원	옥내 수도시설(급수관 등) 개선비용 지원
지원규모	- 국비 60% - 지방비 35%(도10.5, 시군 24.5) - 자부담 5% - 세대 당 최대 200만원 지원 (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	- 지방비 100%(도30, 시군 70) - 자부담 0% - 세대 당 최대 200만원 지원 (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 1순위) 기준 중위소득 45~60% 중 아연도 강관재질 급수관 사용 세대 - 2순위) 45~60% 중 2000년 이전 준공 거주 세대 - 3순위)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거주 세대	- 1순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주택 으로 수질검사결과, 자재내부 부식으로 녹물 출수 세대 - 2순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주택으로 배관 내부 부식으로 탁도, pH, 색도, 함유물질 등이 수질기준 초과세대
제외대상	①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세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세대) ②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세대 ③ 5년 이내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받은 세대 ④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	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 세대 ② 5년 이내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받은 세대 ③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40년 경과하지 않은 세대